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69 발의연월일: 2025. 4. 16.

발 의 자 : 김 건 · 안철수 · 김희정

박상웅 • 김기웅 • 유용원

서일준 · 장동혁 · 김정재

이성권 · 이헌승 · 박충권

인요한 · 김용태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여왔음.

그러나 외교부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외국의 관계기 관과 자료를 교환하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외교부장관의 사무 관장에 '자료의 배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외국의 관계기관과의 자료 교환 등 업무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법률 제 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조사·분석에"를 "조사·분석·배포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외교부) ① 외교부장관은	제30조(외교부) ①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	
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	
외국민의 보호ㆍ지원, 국제정세	
의 <u>조사·분석에</u> 관한 사무를	<u>조사·분석·배포에</u>
관장한다.	<u>.</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